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6월 27일, 최민희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6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18.)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24.) 상정,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최민희의원)

최근 SK텔레콤 해킹사고 발생 시, 국회 요구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유심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행정지도하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이 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로 해석함에 따라 긴급한 이용자 보호 조치의 법적 근거와 관련한 논란이 제기됨.

나아가 향후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 등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러한 명령 이행을 위해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금지행위의 예외로 명시함으로써, 긴급상황에서의 이용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1) 침해사고 등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이용자 보호 조치 가능

- 중대 사고 발생 시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이용자의 위약금 면제, 신규 모집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용자는 사업자 변경이 쉬워지고, 사업자는 이탈 방지를 위해 보안을 강화하려는 유인이 생겨 효과적인 권익 구제가 가능하여 입법 취지가 타당한 면이 있음
- 다만, ① 신규 모집 중단 기간의 상한 설정 검토 필요, ②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괄적 위임에 해당하지 않도록 구체화 필요, ③ ‘침해사고 발생 행위’의 문구를 정보통신망법¹⁾의 규정을 참고하여 명확화 필요, ④ 규제 실익이 부족한 중소 부가통신사업자의 대 상에서 제외 필요, ⑤ 침해사고 위반 사항 발생 행태를 감안한 금지행 위 규정 내용의 수정, ⑥ 이용자의 신청·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보호조 치가 금지행위와 상충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의견: 중대한 과실로 인한 침해사고를 금지행위로 규정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3자에 의한 침해사고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체계상 타당하지 않아 신중 검토 필요

2) 긴급상황 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금지행위 예외 적용

- 긴급 상황에서 피해 방지를 위해 과기정통부 명령이나 허가를 받아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미함.

이용자 동의 없이 약관과 달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행위의 예외로 규정해 신속한 이용자 보호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입법취지에 있어 타당성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대응 과정의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해소할 근거 마련에 동의하며, 이동통신사업자가 명령에 따라 적극적·구체적인 조치를 실행해 실질적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의견: 침해 시 조치에 대한 금지행위 적용 배제를 현행 규정에 포함하고, 사이버 침해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국민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방미통위 고시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 이용자 동의 없는 이용자 보호조치의 통지 및 해지 의사 확인

○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동의 없는 이용자 보호조치의 사후 통지 및 해지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입법 취지에 있어 타당성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 긴급한 이용자 보호조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내용에 동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의견: 중요사항 고지의무(금지행위)와 통신장애 사실 이용자 고지를 현행법상 방미통위가 소관하는 점을 고려, 구체적 안내 필요 사항 등의 규정을 과기정통부가 방미통위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할 필요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김장겸의원, 김현의원, 민병덕의원, 박상혁의원, 이정현의원, 이학영의원, 전용기의원, 최민희의원(2건), 한정애의원, 한민수의원, 황운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